김포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141호

제출년월일 2022. 11. 17. 제 출 자 유 영 숙 의원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유영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이 조례는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시장의 책무 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및 사업추진 등 (안 제4조 ~ 5조)
- 다. 교육 및 홍보, 민간위탁 (안 제6조 ~ 7조)
- 라. 재정지원 및 비밀유지 (안 제8조 ~ 제9조)

4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,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·확산, 엔딩노트 제작 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지원을 통해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웰다잉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